

화순군저소득주민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'98. 2. 9 화순군수

나. 회 부 일 자 : '98. 2. 16

다. 상 정 일 자 : '98. 2. 16 (제60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)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 안 자 :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

나. 개정사유

○ 지방재정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군 금고에 예치·관리코자 함.

다. 주요내용

○ 제7조 제2항중 "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"를 "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 하여야 한다."로 개정

○ 시행일 이전에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만기가 도래하지 아니하는 기금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만료될때까지 계속 예치할 수 있도록 부칙 제2항 경과조치 규정 신설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허길중)

○ 본 조례 개정은 관계 법령에 맞도록 규정하기 위한 개정 조례로서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를 거치는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.

4. 질의답변요지

" 생 략 "

5. 토론요지

" 생 략 "

6. 심사결과

" 원안가결 "

첨 부 : 화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 2항중 “장학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한다.” 를 “기금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.” 로 한다.

제8조를 제8조의 2로 하고 제8조의 2를 3으로 하며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 (기금관리공무원지정)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.

1. 기금운용관 : 사회복지과장
2. 기금출납원 : 사회보장계장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조례는 시행일 이전에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만기가 도래하지 아니하는 기금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만료될때까지 계속 예치할 수 있다.

신.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 (장학금의 조성 및 관리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장학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한다.</p> <p><u>(신 설)</u></p>	<p>제7조 (장학금의 조성 및 관리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.</p> <p>제8조 (기금관리 공무원 지정)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.</p> <p>1. 기금운용관 : 사회복지과장</p> <p>2. 기금출납원 : 사회보장계장</p>
<p><u>제8조 (생 략)</u></p>	<p><u>제8조의2 (현행과 같음)</u></p>
<p><u>제8조의2 (생 략)</u></p>	<p><u>제8조의3 (현행과 같음)</u></p>